

# 2023년도 제18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26(수), 10:30 ~ 11:50
- 장 소: 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1명
  - 심의위원: 김경숙 심의위원장,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원 위원, 노정동 위원, 박재화 위원, 위정현 위원, 임형주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위원장
2. 전차(제2023-8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심의위원
3. 안건상정 ..... 위원장
  - 보고안건 제1호: 2023년도 2분기 주요 심의 현황
    - ※ 안건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태일 주임
  -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태일 주임
  - 의결안건 제2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김태일 주임
4. 폐회선언 ..... 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보고안건

- 제1호: 2023년도 2분기 주요 심의 현황
  - 주요내용
    - 2023년도 2분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함.

### 2. 의결안건

- <전차 회의록 확인 및 공개>
  - 전차 회의록(제2023-80회) 확인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함.
    -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계정 정지 시정권고 의결안건의 회의록 및 논의 안건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23-108402호~108403호는 제2023-148회 제4분과위원회(2023. 6. 22. 개최)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이며, 안건번호 제2023-108404호~108406호는 제3분과위원회(2023. 7. 12. 개최)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SW 제품키 등을 판매하는 사안임.
  - 회의결과

- 안전번호 제2023-108402호~10840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이나, 계약상 약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보호원이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관리자가 직접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08406호는 쇼핑몰에서 가상악기 SW를 판매하는 사안으로, 판매가격 및 게시글 내용이 정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해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48개 계정에 대해 18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함

- 회의결과

-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안건 18개 온라인서비스의 48개 계정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였으므로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 대체 가능성,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 정지 시정권고를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김경숙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8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2. 전차(제2023-8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 여부 결정

- 김경숙 위원장: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5쪽~17쪽 위원명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각 의결안건 부분은 토의에 참여하여 발언한 위원명을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여도 무방할 것임. 규정 개정 안건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김경숙 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의결안건 논의 부분에서 위원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규정 개정 안건 논의 부분인 9쪽~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여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보고안건 제1호: 2023년도 2분기 주요 심의 현황

- 김태일 주임이 2023년도 2분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함.

**0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태일 주임: (심의안건 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서)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ㄱㄱㄱㄱㄱㄱㄱㄱ'이며, 시정권고 이행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 '○○○○○○○○○○'임. 위원님들께서는 각 당사자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제척 사유 해당 사항이 없음.
- 김경숙 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김태일 주임: 안전번호 제2023-108402호~제2023-108406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5건으로 온라인 쇼핑몰 '◆◆', '○○○○○○○○○○'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3-108402호~108403호는 판매자가 이의제기를 신청한 건이며, 안전번호 제2023-108404호~108405호는 동일한 판매자가 소프트웨어를 판매중인 사안으로 모두 ○○○○○○○○○ ○○○○○○○○ 라이선스 키를 판매중인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3-108406호는 음악 소프트웨어를 판매중인 사안임.

- 김경숙 위원장: 소프트웨어 관련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음. 특히 심의대상 게시물들 같은 경우 다른 디지털저작물과 달리 제품키만 구매한 후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어, 심의 대상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보임. 또한 정품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양도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 권리소진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권리소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2분과에서 심의대상 게시물과 비슷한 안건을 심의한 바 있음. 당시 해당 저작물 역시 ○○○○로, ○○○○는 예전에는 영구 라이선스로 판매를 하였지만, 현재는 연 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영세한 기업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라이선스 비용이 비싸서 구매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국가별로 가격 정책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워낙 불법 복제가 많아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한국인이 중국에서 구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한 ■■■ 소프트웨어를 일본인들이 불법이 아닌 정품으로 알고 구입하여 문제가 되었었음. 2분과 심의 당시,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불법으로 보고 시정권고 가결의견을 제시하였고, OSP에서 제출한 해명 자료에는 중국에서 구입하였다는 것 이외의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B 위원: 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것이 맞음.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소프트웨

어 업체들도 좀 느슨하게 접근하는 경향도 있음. 예를 들어 ♣♣♣♣ 같은 경우 예전에 대학교에 라이선스를 풀어 주었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회사업무 또는 영업활동을 할 때 ♣♣♣♣♣♣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임. 저작권 침해가 너무 심해서 공정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최소한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보호원의 설립 목적이라면, 라이선스 위반까지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임. 권리자들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국가가 라이선스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제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10만원 주고 산 후 그걸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다면, 라이선스 위반은 맞지만 그걸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임. 이런 형태의 거래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C 위원: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좀 더 복잡해보임. 요즘 한국 음악 아티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해당 아티스트의 CD를 제조해서 판매하려고 라이선스를 받고 있는데, CD 같은 유형 매체도 국가마다 주는 라이선스가 다름. 일본은, 대만 같은 곳에서 만든 일본 레코드가 너무 많이 역수입이 되어서, 아예 저작권법 안에 역수입 자체를 위반으로 규정을 해서 막은 사례가 있음. 사실 우리나라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저작물 관련하여 권리소진이나 국제소진을 다 인정을 하고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온라인상 디지털저작물인 경우 음악, 전자책은 온라인상에 양도가 될 때마다 복제가 반드시 이루어져 권리소진이 안되는 것으로 판결

이 났음. 다만 소프트웨어는 조금 성격이 달라, 정품을 사용하려고 하면 결국은 공식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제품키가 양도되는 것 관련 미국, 유럽의 판결이 다르게 난 부분이 있음. 유럽에서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지침에 근거하여, 지침에서의 복제물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다 적용이 되므로 권리소진으로 판결하였고, 정품에 접근하기 위해 제품키를 재판매하는 것에 대해 권리소진을 인정하였음. 미국은 ○○○○ 관련 사건에서 1심은 유럽과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영구 라이선스이지만 라이선스와 관련한 권리는 ○○○○○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리 소진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온라인에서의 이용은 배포권이 적용이 안되고, 권리소진은 배포권에만 적용이 되어 권리 침해라고 판결하였음.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보호원의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나 아니냐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B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즉 위법은 될 수 있으나 보호원에서 지금 다룰 만한 사안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되는 부분임.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생각임. 이러한 사안에 대해 권리소진이나 아니냐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음.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일단 권리 소진은 아니냐라는 취지로 입장을 정하였음. 다만 현 상황에서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심의에서 이런 것까지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음. 예전에 최승수 변호사님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제도를 입법했다 이렇게 쓰신 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의

심의제도는 사법적인 영향도 전혀 없는 행정형으로, 권리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서 해주는 제도임. 지금 이 사안도 ○○○○○○ 혹은 권리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것임. 그러면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이런 것을 권리자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국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E 위원: 4분과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던 이유는 그 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위법, 합법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함. 거대 기업 즉 글로벌 기업이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국가 간의 약관에 대해서, 보호원 같은 행정기관이 다루어야 하는지 의문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간의 거래는 권리 혹은 제품이나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리셀 시장이 있는데, 국제적인 기업에게 그걸 예외적으로 적용해줘야 하느냐는 것임.

- A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 거기서 산 소프트웨어를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번 사안과 같은 것을 놔두면 분명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라이선스 위반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것임. 제 생각에는 우리 심의위원회가 이런 사안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소프트웨어 불법 이용이 넘쳐날 것이며, 역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음. ○○○○○○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싸지만, 유럽과 비교하면 가격이 동일함.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좀 봐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건 막아줘야 한다는 견해임.

- E 위원: 현재 불법 복제가 가장 심한 분야는 웹툰이며 해외에서 웹툰 전체를 그대로 불법으로 서비스 하고 있음. 그래서 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좀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견해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저작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것과 해외에서의 기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

- F 위원: 좀 전에 홍지만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중국 회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됨. 또한 EU 법의 취지와 개별 국가가 갖고 있는 저작권법의 취지는 다른데, EU는 통합적인 것으로 EU 권역 내에서의 소진을 마치 권리소진처럼 보기 위한 것으로, 개개별 국가에 대한 크로스보더의 문제는 그 국가에서 소명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같음. 그런면에서 국제 사법도 있는 것이기에 100% 불법 배포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조에까지 확정해서 해석하는 건 조금 어려워 보임.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판매자를 막아 엔드 유저를 보호해주자는 A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임. 만약 계속 판매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엔드유저들이 불법복제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사용하게 되어 저작권 방조 침해가 되는 것임. 그러면 형사처벌도 되기에 그전에 막는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E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얼마전에 AI 판결에서도 나온 것처럼 해외 기업의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중속, 기술독점을 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행정 법원 판결인데 그런 취지는 공감함. 그런데 만약에 ♥♥♥♥♥♥♥♥가 한글 SW를 만들어서 전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한국에는 10만원에 팔고 중국에는 5만원에 파는데 판매자가 중국에 있는거 사서 한국

에서 7만원에 팔면 그거는 놔둘 것이냐, 국내 기업이나 혹은 해외 기업이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으며 그것보다는 크로스보더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임.

- D 위원: 좀 전에 A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법인이 바뀐 것으로 소송한 사례가 있음. 위원님께서 업체가 바뀌어도 허용해주는 약관도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약관에 따라 합법, 불법일 수도 있는 문제를 보호원이 개입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임. 내가 샀는데 라이선스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파는게 왜 안되냐는 권리 소진과 관계없이 권한을 판매하는게 왜 안되냐라는 것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저작권법 제46조 3항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 미국에 약관법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약관을 가져다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따라서 권리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에 대한 문제임. ●●●● 케이스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라이선스 위반과 계약 조건 위반을 사용과 이용 개념에 대해 나누고 법원이 다소 애매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음. 즉 이런 것까지 사법기관이 아닌 보호원이, 명확한 데드카피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검토를 하고 조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인 것임. 그리고 F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작권법 제124조 1항 3호를 말씀하신 것으로, 세미나에서 한번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됨.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 저는 판매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저게 저작물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복제물인가, 복제물 자체는 합법인데 키만 바꾼 것인가 이런 문제는 법원에 가면 많이 다뤄질 것이고 ○○○○○는 얼마든지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조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며, 또 우리가 이것을 조치했을 때 확신 할 수 있는가 고민이 됨.

- G 위원: 이게 적법이나 불법이나 봤을 때는 F 위원님이나 D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에 가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사실은 병행수입, 권리소진이나 크로스보더는 너무 법적으로 복잡한 영역이고 대법원 판결들을 봤을 때 적어도 지금 사안은 불법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호원이 어디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냐 하는 부분에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D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들을 이 사안에 적용해서 보호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함. 실제로 권리행사를 ○○○○○○에서 직접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아직은 가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생각함.
- H 위원: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음.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이 대기업이다, 해외 기업이다, 이런 것을 물론 고려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정황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일관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저작권법의 불법복제물 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불법복제물 등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작권이나 그 밖의 법에 따라서 보호된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 판매자의 소프트웨어는 일단 불법복제물 등에는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임.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물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지만 저작권법에 있고 심의위원회 자체가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I 위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보니 저도 기준을 많이 고민하게 됨. 이 심의기구가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자가 자기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구인데, 저는 이런 저작물 시장에서 우리 같은 기구를 통한 이른바 적극적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함. 물론 ○○○○○ 등 이런 큰 업체처럼 알아서 권리를 주장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업체들도 있지만,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도 역력이 안되고 혹은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권리자들도 많다고 생각함. 어떤 영역 내지는 어떤 권리자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지를 나눌 수는 없음.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심의 의결하라고 입법자들이 고민하면서 법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됨. 결국에는 사안마다 보호심의부에서 조사하는데 고생을 하고 계시며, 그 조사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전송된 사실의 발견 내지는 전송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시정권고 여부에 대해 의결하는 것이 맞아 보임. 그러한 맥락에서 1번 내지 4번 사항은 H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어 저는 가결 의견임.
- C 위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리얼 번호를 복제해서 갯수에 상관없이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음. 요즘에는 시리얼 번호를 이용할 수 있

는 이용자의 수가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5명으로 한정된 경우 6명이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함.

- A 위원: ■■■■의 경우 학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예를 들면 150~200%정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시리얼 키를 계속 체크를 하고, 설정된 비율을 넘으면 중단시킴. 이럴 경우 정상적으로 시리얼 키를 설치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사용하도록 부여된 라이선스를 집 혹은 외부에서 사용하기 때문임.
- C 위원: 안전 내용을 보면 그 영역이 좀 애매해 보임. 예를 들어 정품키를 100명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 10명 밖에 안사용하니 나머지 90개를 저런 방식으로 리셀을 하는 것인지, 정말 불법복제물을 판매를 하는 것인지 애매함.
- A 위원: ○○○○○는 건축, 설계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은 대량으로 정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소규모로 구매를 하다 보니 각각 부여하는 라이선스가 다름. 그래서 라이선스 번호로는 중국 혹은 한국에서 판매를 하였는지 체크를 못할 수 있으며, ■■■■처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안하기 때문에 체크하기가 어려움.
- C 위원: 회사마다 라이선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 A 위원: 그러함.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정책도 다름.

- G 위원: 불법이나 적법이나로 봤을 때 저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 가서 증거자료를 판단하기 전에는 불법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함. 사실 라이선스 유형이 PC당 하나씩 설치, 유저 수로 제한, 동시 접속자 수로 제한 중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걸 넘어가면 설치가 안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는 되지만 위반으로 보는 것인지, 그 다음 실제로 라이선스를 줄 때 다른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등은 소송에 가서 보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움. 하지만 구매하는 사람들이 엔드유저가 되고 그사람들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저작권보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일 을 수 있다는 생각임. 아직은 그런 케이스가 없는 상태이기에 저는 부결의견이지, 이게 결코 불법일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님.

- 김경숙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08402호~제2023-108405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안전번호 2023-108406호는 위 안전들과 별개의 사항인 쇼핑몰에서 가상악기 SW를 판매하는 사안으로, 정품은 이런 방식으로 판매가 되지 않으며, 가격 및 게시물 내용을 볼 때 불법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함. 더 의견 주실 위원님 없으시면 해당 안전들에 대해서는 표결에 의해 의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김경숙 위원장: 안전번호 제2023-108402호~제2023-10840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며(가결 4인: H 위원, I 위원, A 위원, F 위원/ 부결 7

인: C 위원, G 위원, J 위원, B 위원, E 위원, D 위원, K 위원) 안전번호 제2023-108406호는 만장일치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o 의결안건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제1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6쪽부터 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46개 계정에 대해 18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 정지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5. 폐회 선언

o 김경숙 심의위원장이 제18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8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8. 22.

위원장 김경숙

위원 김민아

위원 김성주

위원 김 원

위원 노정동

위원 박재화

위원 위정현

위원 임형주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

위원 홍지만